

구미시 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

구 미 시

구미시 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제출연월일 : 2026. 8. .

제출자 : 구미시장

1. 제안이유

국민권익위원회 「86개 지자체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」에 따라 축제위원회
위원 제척·기피·회피 규정을 보완하고 축제 평가 및 결과 반영에 관한
사항을 명시하여 위원회 운영의 부패요인을 차단하고 투명성을 높이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위원의 제척·기피·회피에 관한 사항(안 제7조의2)

나. 위원의 해촉에 관한 사항(안 제7조의3)

다. 축제 평가에 관한 사항(안 제14조)

라. 용어 정비(안 제7조)

3. 조례안 : 붙임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법」, 같은 법 시행령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감사담당관, 정책기획과와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(붙임)

구미시 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구미시 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제2항제1호 중 “시의회”를 “구미시의회”로 한다.

제7조의2 및 제7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7조의2(위원의 제척·기피·회피)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·의결에서 제척된다.

1. 위원 또는 그 배우자이거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당사자인 경우
2. 위원이 당사자와 직계 존속·비속 및 4촌 이내의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
3. 위원이 해당 사건에 대하여 증언, 진술, 자문, 연구, 용역 또는 감정을 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
4.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
5.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사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

② 해당 사건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·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,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.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.

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·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.

제7조의3(위원의 해촉) 시장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하여야 한다.

1.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경우
2. 위원이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 장기 해외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
3. 위원이 스스로 사직하는 경우
4.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
5. 그 밖에 비위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한 경우

제1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4조(축제 평가) ① 시장은 축제가 종료된 후 성과 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, 필요한 경우 외부기관에 위탁하여 평가할 수 있다.

② 시장은 제1항의 평가 결과에 따라 개선 또는 보완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다음 축제의 계획 및 운영에 반영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	행	개	정	안
제7조(구성 및 임기) ① (생략)	제7조(구성 및 임기) ① (현행과 같음)			
② 위원회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축제업무 담당 국장이 되며,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 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.	② ----- ----- ----- -----.			
1. <u>시의회</u> 의원	1. <u>구미시의회</u> ----			
2. ~ 4. (생략)	2. ~ 4. (현행과 같음)			
③ · ④ (생략)	③ · ④ (현행과 같음)			
<u><신 설></u>	<u>제7조의2(위원의 제척·기피·회피)</u>			
	<u>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위원회의 심의·의결에서 제척된다.</u>			
	<u>1. 위원 또는 그 배우자이거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당사자인 경우</u>			
	<u>2. 위원이 당사자와 직계 존속 · 비속 및 4촌 이내의 친족이 거나 친족이었던 경우</u>			
	<u>3. 위원이 해당 안전에 대하여 증언, 진술, 자문, 연구, 용역 또는 감정을 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</u>			

<신 설>

4.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

5.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

② 해당 안건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·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,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.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.

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·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.

제7조의3(위원의 해촉) 시장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하여야 한다.

<신 설>

1.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경우

2. 위원이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 장기 해외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

3. 위원이 스스로 사직하는 경우

4.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

5. 그 밖에 비위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한 경우

제14조(축제 평가) ① 시장은 축제가 종료된 후 성과 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, 필요한 경우 외부기관에 위탁하여 평가할 수 있다.

② 시장은 제1항의 평가 결과에 따라 개선 또는 보완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다음 축제의 계획 및 운영에 반영할 수 있다.

관계법령

□ 「지방자치법」

제13조(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)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 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.
다만,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.

1. ~ 4. 생략

5. 교육·체육·문화·예술의 진흥

가. ~ 다. 생략

라. 지방문화·예술의 진흥

마. 생략

6. ~ 7. 생략

제117조(사무의 위임 등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,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.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(사업소·출장소를 포함한다)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.

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

속하는 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·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.

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제130조(자문기관의 설치 등) ①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문기관(소관 사무에 대한 자문에 응하거나 협의, 심의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심의회, 위원회 등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을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② ~ ⑤ 생략

□ 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

제78조(자문기관의 설치요건)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법 제130조제1항에 따른 자문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.

1. 업무 특성상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
2. 업무의 성질상 다양한 이해관계의 조정 등 특히 신중한 절차를 거쳐 처리할 필요가 있을 것

제79조(자문기관의 구성) ① 법 제130조제1항에 따른 자문기관은 설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는 데 필요한 인원으로 구성한다.

② 법 제130조제1항에 따른 자문기관의 위원은 비상임으로 하고,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.

제80조(자문기관의 존속기한)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30조제1항에 따른 자문기관을 설치할 때에 계속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자문기관의 존속기한을 조례에 분명히 밝혀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은 5년의 범위에서 자문기관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한다.

소 관 부 서		낭만관광과
입 안 자	과 장	장 정 수
	팀 장	신 재 우
	담 당 자	신 민 우 (480-2652)